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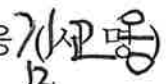
<목 차>

1. 폐기물처리수수의 차등 적용 범위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작 성 자	이름	강경민
	담당부서 (과)	생활폐기물과		직급	환경주사보
	국장	김고응		연락처	044-201-7406
	과장	황남경		이메일	kyeongm@mail. go.kr

2026. 06. 12.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 국장 성명 :

김고응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2.규제조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3.위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26.1.1. 수도권 지역에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되었고, '30.1.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반면, 폐기물처리시설은 님비(NIMBY) 시설로 설치·운영이 어려워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특·광역시는 광역 지방정부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 입지할 기초 지방정부 및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고 유인책이 적어 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임 ○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기금재원 중 법령상 100분의 10의 상한을 두고 있는 폐기물처리수수료 가산금의 상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 폐기물처리수수료 가산금의 상한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서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기초 지방정부 및 반입하려는 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관련기관</td><td>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서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기초 지방정부의 장</td><td>228개</td></tr><tr><td>피규제자</td><td>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서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관련기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서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기초 지방정부의 장	228개	피규제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서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	-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관련기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서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기초 지방정부의 장	228개											
피규제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서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	-											
9.규제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 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u>10</u> 을 말한다.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 ----- ----- ----- <u>20</u> 을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26.1.1. 수도권 지역에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되었고, '30.1.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이 불가피함
-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인 님비(NIMBY) 시설로 설치·운영이 어려워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특·광역시에는 광역 지방정부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 입지할 기초 지방정부 및 주민 반대가 있는 반면 유인책이 적어 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

○ 정부개입 필요성

-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기금 재원 중 법령상 상한을 두고 있는 폐기물처리수수료 가산금의 상한을 상향하여 주민 수용성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 폐기물처리수수료 가산금 상한 상향

○ 선택 근거

- 현행 규정상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기초 지방정부 외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 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에 활용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의견조회 예정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 규제목표

- o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가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 등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그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지방정부 간 협의를 거쳐 부과함
- 따라서 가산금의 상한을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 이내로 규정하고 지역 여건 및 지방정부 간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함
- 기본적으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조례 등으로 정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어, 동일하게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가산금의 상한도 동일 범위인 100분의 20 이내로 규정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폐기물처리수수료 가산금 상한을 상향하는 규정으로 기술규제 없음

- 경쟁영향평가

폐기물처리수수료 가산금 상한을 상향하는 규정으로 경쟁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동 규정의 실질적 피규제자는 기초 지방정부로 형평성을 감안한
규제의 차등 적용 필요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 등을 부과·징수하여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설치, 상수원관리지역 및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주요 피규제자는 기초 지방정부이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시 미리 지방정부 간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므로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지방정부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집행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 가산금 부과에 필요한 인력은 확보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미리 지방정부 간 협의 등을 거쳐 가산금 부과정도를 결정하므로 협의 시 예산 사항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함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피규제자 현황

- 현행 규정상 피규제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서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기초 지방정부 및 반입하려는 자이나 최근 5년간 민간에 부과한 사례는 없음
-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어 지방정부가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관외에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함

○ 규정 취지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지원기금 재원 중 폐기물처리수수료 가산금의 상향을 상향한 것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6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폐기물처리수수료 가산금 상한 상향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해당 없음 (최근 5년 민간 부과사례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간접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피규제 일반국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해당 없음	주민지원기금 확충	해당 없음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해당 없음	주민지원기금 확충	해당 없음
정부		지방정부 재정 추가부담 가능성	갈등 비용 완화, 광역처리 협의 촉진	해당 없음
총 합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정성 B/C 분석
기업순비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폐기물처리수수료 가산금 상한 상향>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정성) 영향집단명	타 지역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
활동제목	타 지역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기물 반입
비용항목	해당없음
일시적/반복적	해당없음
근거설명	☐ 직접비용 ○ 규정상 가산금 부과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서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민간 주체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님 ○ 다만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은 통상 지방정부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관할구역 외 처리 시 지방정부 간 광역화 협의 등을 전제로 하므로 실질적으로 가산금 부과는 지방정부 간 반입협의·협약을 통해 이루어짐 ○ 최근 5년간 가산금 부과현황 조사 결과 민간 부문 부과 사례가 전무하고 모두 공공부문에 대한 부과 사례로 확인되어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은 산정하지 않음 ☐ 간접비용 ○ 개정안은 가산금의 법정 상한을 조정하는 것으로 민간의 영업활동, 시장진입, 가격결정 또는 경쟁조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님 ○ 따라서 피규제 기업·소상공인의 간접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편익 ○ 해당없음 ☐ 순비용 ○ 해당없음

②피규제 일반국민

(정성) 영향집단명	해당없음
활동제목	해당없음
비용항목	해당없음
일시적/반복적	해당없음
근거설명	○ 일반국민은 가산금의 직접 납부의무자가 아니며, 개정안은 지방정부 간 폐기물 반입 협의에 적용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조정하는 것임

③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④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성) 영향집단명	해당없음
활동제목	해당없음
비용항목	해당없음
일시적/반복적	해당없음
근거설명	☐ 비용 ○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및 일반국민은 동 가산금의 직접 납부의무자가 아니며, 개정안은 지방정부 간 폐기물 반입 협의에 적용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조정하는 것임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관할 지방정부가,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처리책임을 지고 있음 ○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실제 가산금 부과 여부, 반입량,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및 조례·협약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 산정이 어렵고, 개정 자체로 일반국민에게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편익 ○ 가산금 상한 상향 시 주민지원기금 재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동 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일정 부분의 편익이 발생하나 일률적 산정은 어려움

⑤정부

(정성) 영향집단명	해당없음
활동제목	해당없음
비용항목	해당없음
일시적/반복적	해당없음
근거설명	☐ 비용 ○ 조례·협약에 따라 가산금 부과비율을 현행보다 높게 정하는 경우 폐기물을 반출하려는 지방정부에게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최대 10%p 범위에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지방정부 간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사회 전체 관점의 순비용으로 계상하기 어려움 ○ 또한 법정 상한이 상향되더라도 지방정부가 반드시 20%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 구역 내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하므로 비용 발생은 조건부임 ○ 집행 측면에서는 기존에도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 주민지원기금은 조성·운용하고 있는 바, 별도 행정 조직 신설이나 시스템 구축 비용은 크지 않음 ☐ 편익 ○ 가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고 갈등·지연에 따른 비용을 완화할 수 있음 ○ 폐기물 반입으로 편익을 얻는 지방정부가 시설 입지 지역 주민 지원에 추가 기여하도록 하여 광역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방정부 간 협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다. 종합 결론

o 정성분석 사유

- 문언상 민간 주체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공공폐기물처리 시설은 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으므로 실질 적용 대상은 타 지역 지방정부임
- 최근 5년간 가산금 부과현황 조사 결과 민간부문 부과 사례는 없고 모두 공공부문에 대한 부과 사례로 확인됨
- 가산금은 부과 여부와 요율이 지자체 조례·협약에 의해 결정되어 반입량, 부과요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량화가 곤란함
- 주민 수용성 제고, 갈등·지연 비용 완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촉진 등 편익은 금전가치로 직접 환산이 어려운 비시장·장기 편익임

o 정성분석 결과

- 총비용은 반입 지방정부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과 제한적 행정비용으로 구성되며, 기업·소상공인 및 일반국민 직접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총편익은 입지 지역 주민 수용성 제고, 갈등·지연 비용 완화, 광역 폐기물처리 촉진, 시설 확충 촉진, 생활폐기물 처리 안정성 제고 등으로 지속적·누적적으로 발생함
- 특히 비용은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 간의 비용 발생 성격이 강한 반면, 편익은 주민 수용성 제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라는 공익적 효과로 확산되므로 정성적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판단함
- 이에 따라 정량화에는 한계가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용보다 편익이 큰 규제대안으로 판단됨